

인천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2268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 론 종 결 2022. 2. 18.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5,870원 및 그 중 45,030,860원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2021. 6. 2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8.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20. 9. 4. 접수 제178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8. 1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12. 접수 제367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9. 2. 28. 피고 주식회사 A과 신용보증원금 44,200,000원, 보증기간 2019. 2. 28.부터 2020. 2. 27.까지(이후 보증기간을 2021. 2. 26.까지로 변경), 채권자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10.경 대출채무의 변제 지체 및 국세체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건을 발생시켰다.

2) 원고는 2021. 3. 30. 주식회사 E의 청구에 따라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45,030,8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의 약정 및 재산처분

1) 피고 B는 2020. 8. 27. 어머니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4.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20. 8. 12.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각 처분행위 무렵 피고 B의 재산 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 등을 합한 45,105,8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030,8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6.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구하는 채권은 2019. 2. 28. 체결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로써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8.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무렵 코로나로 인하여 수출이 곤란을 겪게 되어 직원 급여도 체납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8.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후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E에 보증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고, 피고 D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피고 D에 대한 전세대금 반환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의 감사이자 피고 B의 송달장소에서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송서류를 수령한 점 등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